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 지원, 동의서 인정 특례 도입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동의 인정 특례 등 제도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동의서 작성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하여금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축행정시스템 및 택지정보체계 등과 전자적 연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제26조의2제6항”으로,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2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호”를 “영 제18조제1항”으로, “통합 및 결합”을 “통합, 결합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신청) 영 제2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말한다.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신청) 영 제2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을 말한다.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3항”을 “영 제22조제6항”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3항제4호”를 “영 제22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
2.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이하 이 조에서 ‘플랫폼’이라 한다)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플랫폼의 구축·운영
2.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3.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수행
4. 플랫폼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의 제목 “특별정비구역 분할·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특별정비구역 분할·통합·결합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의 제목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의 제목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

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 ----- ----- 제11조제2항, 제26조의2제6항 ---- ----- 제16조제1항, 제27조의3제3항----- ----- ----- -----.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7조의3제2항----- -----.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등) 영 제18조제1항--- ----- 통합, 결합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 -----
<신 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신청) 영 제2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신청)

<신 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영 제2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을 말한다.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말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6항-----
-----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

② 영 제22조제6항제4호-----

-----.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
2.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
랫폼(이하 이 조에서 ‘플랫폼’
이라 한다)과 연계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
의2제4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
을 위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
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플랫폼의 구축·운영
2.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3.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련 기
관과의 공동사업 수행
4. 플랫폼을 이용한 정보의 공
동 활용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개요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유형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위치	
	면적	m ²

구역 내 토지 현황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m ²)	등기상 대지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2							
3							

구역 내 건축물 현황								
번호	행정구역	지번	종류	동·호수	연면적(m ²)	등기상 건축물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단독주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2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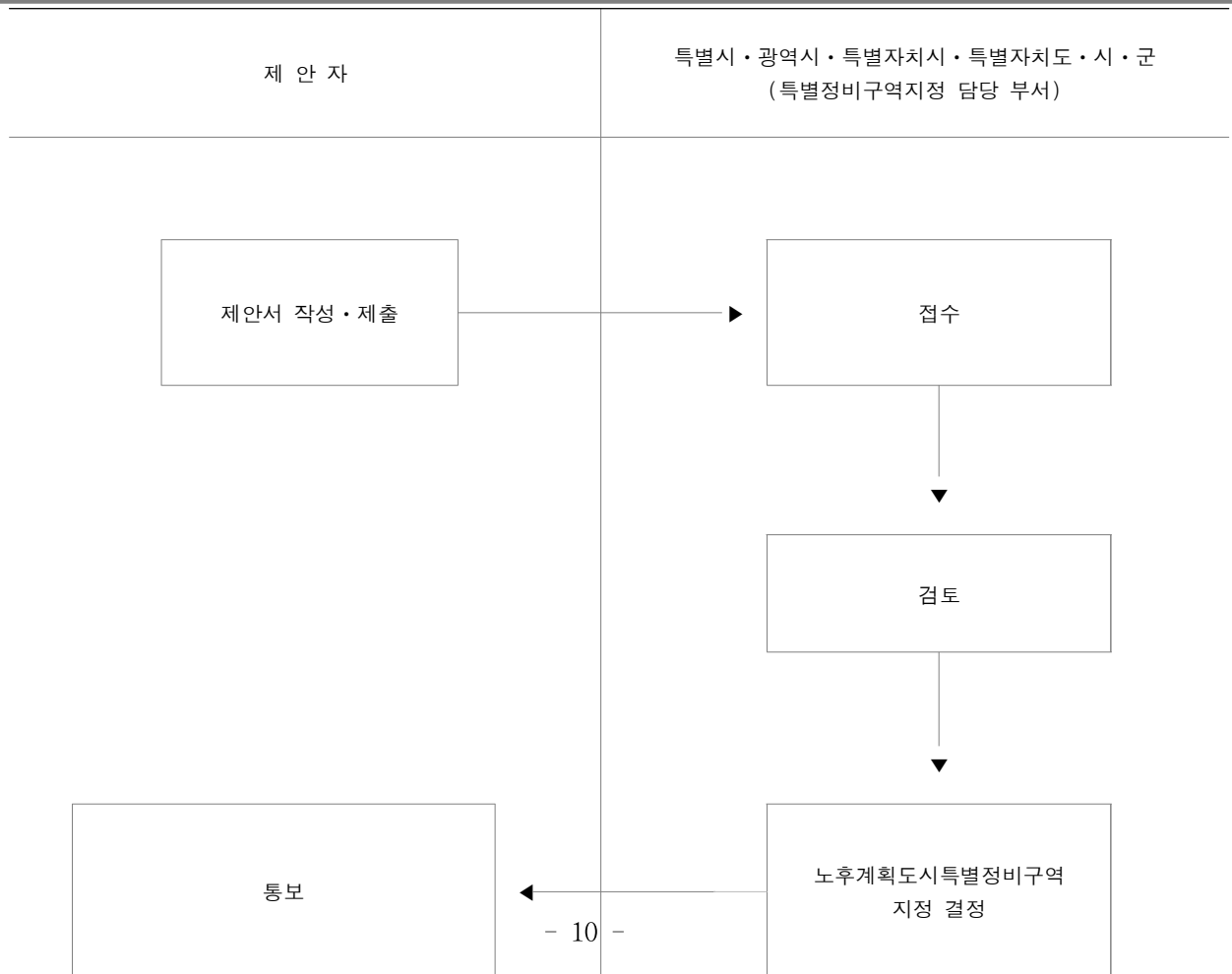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나.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다.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인도장)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26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제27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OO 예비사업시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별정비구역 분할·통합·결합 및 특별정비에정구역의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 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특별정비에정구역 []결합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 및 특별정비에정구역의 결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
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2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 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 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簡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i>상가, 아파트</i>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 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명칭			
	위치			
	면적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	-----

I .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공유여부 및 허가여부)			면적(㎡)
소유권 현 황	권리 내역	토지 (총 필지)	(공유여부)	
			(공유여부)	
			(공유여부)	
		등기상 대지 지분 ()	(허가여부)	동 수
			(허가여부)	
			(허가여부)	
		건축물 (총 필지)	(유형:)	
			(유형:)	
			(유형:)	
		등기상 건축물 지분 ()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지상권 (건축물 외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II . 동의사항

1. 주민대표단 명칭				
2. 주민대표단 구성 ※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 표			
	감 사			
	단 원			
- 15 -				

3. 주민대표단의 업무	(1) 주민대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교체 및 해임과 관련한 세부사항 • 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의 조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대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 업무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운영규정	※ 별첨

III. 동의내용

-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본 동의서 제출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에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고지받았습니다.
- 본인은 II. 동의사항(주민대표단 명칭, 구성, 업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했으며, 위와 같이 대표, 감사, 임원 및 단원으로 구성된 () 특별정비에정구역 주민대표단이 II. 동의사항 중
- 주민대표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특별정비에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해당 용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주민대표단 구성 내역	주민대표단 명칭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구역	구역 명칭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명)	동의율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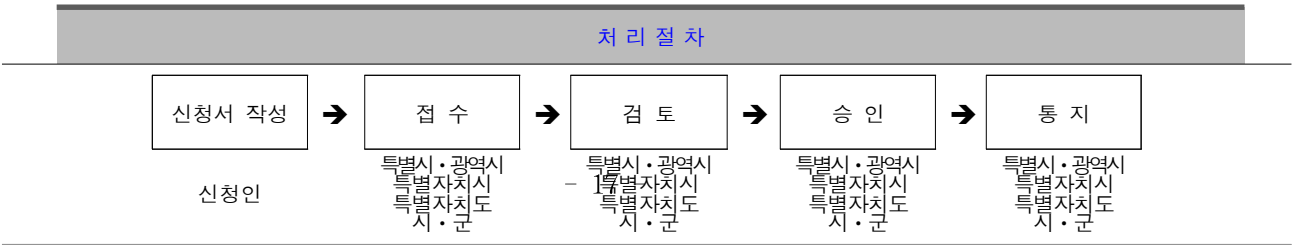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주민대표단이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3.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성명 4. 특별정비에정구역 토지등소유자 명부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 특별정비에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철회서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접수번호	접수일
------	-----

동의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 철회 또는 반대의 내용	(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	-----------------------

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특별정비구역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8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의의 철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주민대표단 구성 추진위원회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특별정비에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위원회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건축물) 현황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2				
3				

첨부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1.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지장으로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동의철회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구역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면적	m ²
	위 치		

사업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목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개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사업기간	
	자금계획	총 액		천원
		국내자본		천원
		외국자본		천원

구역 내 토지 현황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m ²)	등기상 대지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2							
3							

구역 내 건축물 현황								
연번	행정구역	지번	종류	동·호수	면적(m ²)	등기상 건축물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단독주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전단·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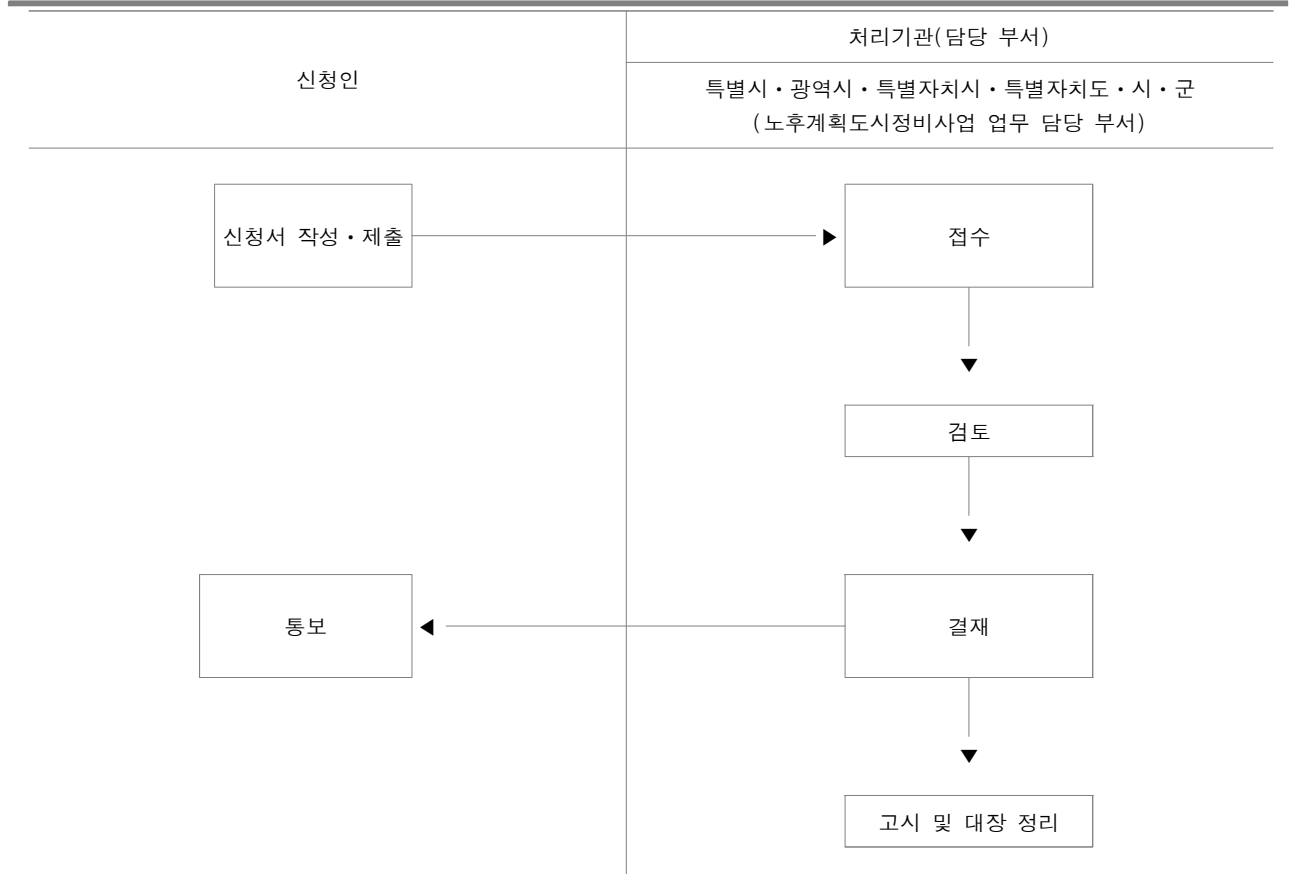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¹⁹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예비사업시행자는 협약등 체결서) 3. 자금조달계획서(예비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제출)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토지등소유자 명부(예비사업시행자에 한한다) 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에 한한다)
------	---

유의사항

작성 시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 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 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의 () 사업시행자 () 예비사업시행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
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 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 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		등기상 대지 지분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총괄사업관리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2인(2인,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i>상가, 아파트</i>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 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 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m ²		
	총괄사업관리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
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경우 토지
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閏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